

시공 능력 없는 '유령회사' 퇴출 수순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팀'은 내년 건설산업 추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영업능력 저하, 하도급업체 부실 확대 등이 우려되고

국토부 10억원 미만 공사 심사 기준 강화 등 입찰제도 개선 검토

때문이다. 특히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

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2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심사가 없고 2억~10억원 미만 공사는 구간별로 실적심사가 이뤄진다.

개선안으로는 2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심사를 도입하고 2억~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공사 구간별로 업종 구분과 만점

기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부

설사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9,917개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2%에 그쳤으며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는 1만2,46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서는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야 하며 김리 등을 활용해 직접 시공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운기자 law4939@knews.co.kr

건설업계 중심제 반응 '온도차'

(종합심사낙찰제)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2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유발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 중심제는 기격은 물론 공사수행능

력이나 고용 창출,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으로 지나친 재정과 품질 저하, 납期·안전 사고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컨소시엄 구성은 3개업체 이내로 제한해 실적이 좋은 중견사끼리 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에 따른 가점이 0.2~0.4점에 불과해 대기업들이 구매여 지역 업체와 손잡을 이유 도 없애졌다.

결국 도내 업체들이 지금보다 더 대체기술자 평가 항목의 보유 및 교육 여부에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과 사제적 책임 항목의 상생협력 배점도 상황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획일적인 중심제는 자칫 대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찬 "최저가낙찰제 부작용 개선"

반 "대형건설사만 유리한 제도"

기술 자격증 대여 기승… 근절책 마련돼야

브로커·기술자·건설사 적발 잇따라… 업계 “부실업체 퇴출, 수사 확대 필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브로커와 기술자, 건설사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체 보호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자격증 대여 수사를 확대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와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로 브로커 2명과 대학교 교수 1명 등을 적발했다.

브로커들은 경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55명에 대해 이미 폐업한 건설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 이를 건설사에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대학 교수는 등록만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유령 학생’ 32명을 입학시킨 후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 경력증을 부정 발급받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1일에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역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6명과 건설사 22곳, 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52명을 적발했다고



日 “위안부 문제 마음으로부터 사죄”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합

발표했다.

건설사들은 적은 비용으로 법정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술자는 대여료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제안에 대여를 수락했다.

브로커들은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모집책 역할과 건설사를 대상으

▶관련기사 3면

로 한 일선 영업행위를 함께 수행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브로커는 명문대 도 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컨설팅 등에 종사하던 중 건설회사의 요구로 동문들을 상대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다가 다른 모집책과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창원지검은 전했다.

며칠 사이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적발이 잇따르면서 만연한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들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여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김정석기자 jskim@

▶3면에 계속

1면서 계속=기술 자격증 대여 기승… 근절책 마련돼야

전주지검 수사는 브로커가 차린 회사에 대한 투자자 분쟁으로 시작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창원지검에서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수사중 조합 정비업체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음부터 자격증 대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격증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진

행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명의를 빌려준 100여명과 대여받은 건설사 200여개사 등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역시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수사를 계속해 이 같은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견실한 업체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의 단속과 수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견실한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사를 운영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견실업체 보호와 부실업체 퇴출 차원에서도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 2015.12.29(화) 건설경제 】

“자격증 빌려주면 年200만원 주겠다” 브로커 유혹에 빠져

“별다른 생각없이 넘겼다.”

- 자격증 빌려준 A씨

“다들 대여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 자격증 빌린 B씨

건설기술경력증 불법대여가 만연한 데
는 건설기술자와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
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동시에 처벌 강화와 감독 시스템 등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지적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 대여
사범’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기술경
력증 등을 빌려준 52명은 주부, 무직, 일반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면 일을 하지 않
아도 연 100만~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
고, 4대보험까지 가입시켜준다는 브로커
의 유혹에 빠져 자격증을 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서울 소재 명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연 15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별다른 생각없이 건설
기술경력증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브로커 B씨와 대학교 동문이었다.

창원지청이 다수의 대여자들을 조사한

건설기술자 형식상 지원 등재 관행에 도덕적 해이 심각
업계 자정노력 필요… 감독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 시급

결과 이처럼 죄의식 없이 경력증을 대여하
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은 적은 비용으로 정비사업 전
문관리업과 각종 건설법령상 등록요건 관
급공사 입찰요건을 갖추기 위해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건설업체에는 건설기술자를 형식상 직
원으로 등재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
이다.

이 창원지검의 판단이다.

특히 창원지검은 건설기술자들은 물론

다수의 건설사 대표들 역시 위법행위에 대
한 인식이 미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
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들 대
여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자와 업계의 자율 정화는
물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창원지검은 이전에 건설업체 대표나 브

이뤄지지 않아 고질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여자에 대
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
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
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
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실제로 기술자
를 고용해 상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창원지검은 덧붙였
다.

김정석기자 jskim@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5년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재(동서건설) 대표이사, 윤현우(주)삼양건설 대표이사, 최삼규(대한건설협회) 회장, 전욱(주)대한 대표이사, 최영종(남경종합건설) 대표이사, 염광수(신화건설) 부사장. 안윤수기자 ays77@

건협 ‘2015 건설업 윤리경영 대상’ 시상

대상에 동서건설… 삼양·대한·남경·신화 우수상

대한건설협회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
회관에서 2015년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업체로는 대상에 동서건설이,
우수상에는 삼양건설, 대한, 남경종합건설,
신화건설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동서건설은 윤리경영위원회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임직원 윤리교육 및
상담을 위한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수상업체에는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 배

점 2점이 부여된다.

최삼규(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개별기업의 발
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며 “윤리
경영 모범 사례가 건설산업 전반에 확산돼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도
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
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해 그 사례를 확
산시키고자 지난 2011년부터 대한건설협회
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후
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 2015.12.29(화) 건설경제】

이상호 건산연 7대 원장 취임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7대 원장(사진)이 28일 취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건설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재의 영입과 양성, 소통과 혁신을 통해 연구원을 명실상부한 건설업계 최고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호 원장은 1964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GS건설 전략담당 겸 경영연구소장, 한미글로벌 사장 등을 역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최삼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은 28일 건산연 선출직 이사 5인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 5인은 △정현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정명건설) △조종수 ” 대구광역시회장(서한) △오인철 ” 강원도회장(태성종합건설) △이권수 ” 광주광역시회장(고운건설) △윤현우 ” 충청북도회장(삼양건설)이다. 임기는 앞으로 3년이다.

아하! 그렇구나

공제조합 계약보증의 보증범위

Q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게 선금금을 지급하고 공제조합인 C가 발급한 계약보증서(실손해 약정)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의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데, B로부터 지체상금과 잔여 선금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C에게 계약보증서를 근거로 지체상금 및 선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도급인 A는 계약보증서를 근거로 공제조합 C에 지체상금 및 선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보증계약은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이 수급인의 공사 도급계약의 이행 및 공사도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계약보증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경

우에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당연히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또한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선금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그 선금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이와 같이 수급인 B의 지체상금지급의무 및 선금금반환의무는 계약보증의 보증범위에 포함되므로 도급인 A는 공제조합 C에 계약보증서를 근거로 지체상금 및 선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